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7번
----------	-------

2021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1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라. 상정결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6월 322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및 코로나 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685,000천원

※ 총 출연금액 : 20,975,489천원 (기정 출연금액 : 20,290,489천원 포함)

2) 추경필요성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은 하였으나, 상품화 단계에서 성장이 멈춘 잠재력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기업의 재도약 기회 부여와 디자인 산업분야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00,000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

###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우리시는 코로나19 관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DDP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으나,
- DDP는 개관 이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재정자립)해온 기관임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한 DDP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 보전액 185,000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

#### 다.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모 : 대지 3,191 $m^2$ , 건물 5,937 $m^2$  (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 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옛 동대문운동장 부지)
- 2) 규모 : 총 면적 86,574 $m^2$ , 지상 4층, 지하 3층
- 3) 개관일시 : 2014. 3. 21.
- 4) 전경 및 위치도



## 5) DDP 시설 현황 : 5개 공간 21개 시설

알림터	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장, 복합문화공간(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벤션 시설로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li> <li>• 디자인·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 콘서트, 시사회, 공연 등</li> </ul>
배움터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미래로 전파·전승</li> <li>• 디자인·패션 전문 전시,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li> </ul>
살림터	디자인샵, DDP스토어, 살림1관 (D-숲), 살림2관 (크레아), 화상스튜디오, UD플랫폼, 디자인 라이브러리, 잔디 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공유, 창조산업 지식·정보 제공</li> <li>•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 시민 디자인·브랜드 체험</li> </ul>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문화 전시·이벤트,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li> <li>•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li> </ul>
디자인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의 만남과 휴식, 편의지원</li> </ul>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규모 : DDP 입점업체 14개소  
(단위 : 천원)

감면 대상	감면 임대료(A) (사용료50%)	감면 관리비(B)	총액(C) (C=A+B)	비고
14개소	160,000	25,000	185,000	2021년 1차

※ 감면대상 업체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사실 입증 가능한 경우
  - 소 기 업 :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 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1)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역상권 사용료 인하를 함으로써 사용료 인하의 민간 확산을 견인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sup>1)</sup>에 부합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를 감면하는 지원방안(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음.

---

1)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임대료 감면사항〉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감면금액	
1	살림터	노태그(디자인숍) 7,323,000	
2		테테루(디자인숍) 9,143,000	
3		피니셔클럽(디자인숍) 6,304,000	
4	알림터	카페드페소니아(카페) 45,302,000	
5	디자인 장터	롤링핀(카페) 17,656,000	
6		티라레미(카페) 11,513,000	
7		공차(카페) 16,577,000	
8		오타르(카페) 5,290,000	
9		나이쏘이(음식점) 12,313,000	
10		모모야(음식점) 12,313,000	
11		프랭크부대(음식점) 12,313,000	
12		마라라,비와별(음식점) 12,313,000	
13		압구정델리(음식점) 12,313,000	
14		소복(카페) 4,327,000	
총계		185,000,000	

- 이에 따라 DDP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14곳에 대하여 1억 8천5백만원의 감면을 확정하였음.

### 〈임대료 감면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감면 대상	감면 임대료(A) (사용료50%)	감면 관리비(B)	총액(C) (C=A+B)	비고
14개소	160,000	25,000	185,000	2021년 1차

## 2) 출연규모의 적정성

- DDP는 초기 설립계획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재정자립 수준을 100%로 설정하면서, 수익목표의 미달성 분을



지출 축소와 전기이월금 투입을 통해 수지를 맞추는 방식 등으로 재정자립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10조(관리비 부담 및 집행)DDP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이 수탁재산을 활용하여 발생시키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가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

- DDP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결과, DDP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운영수입은 평균 150~160억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현재 DDP 시설운영과 34명의 인건비 정도의 운영만 가능한 수준임.

〈2021년 DDP 운영 수입 :140억 2천7백만원〉

- 대관수입 : 7,027,050천원
  - 임대수입 : 5,238,550천원
  - 주차수입 : 1,300,000천원
  - 전시운영 수입 : 80,000천원
  - 광고 수입 : 240,000천원
  - 투어 수입 : 20,000천원
  - 물품 보관함 운영 수입 : 21,000천원
  - 브랜드상품 판매 수입(DDP디자인스토어) : 100,000천원
-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DDP 임대공간(살림터, 디자인장터)에 신규업체 유치가 어려워 DDP 운영수입의 주요 원인인 임대수입이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DDP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DDP 자체기획 전시의 운영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간에 DDP 재정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 1) 출연의 필요성

- 서울디자인창업센터<sup>2)</sup>는 디자인 특화 성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예비, 초기 창업가 발굴·육성하여 서울의 디자인 산업 발전과 혁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2020년 7월 1일).

현재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디자인 창업 특화 공간 ‘서울 코-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청년 입주기업 23개를 발굴하여 법률, 세무, 브랜딩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지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스타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 3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품개발,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유치 매칭 기회 제공, 제품 유통 및 홍보 지원 등을 하는 것임.

---

<sup>2)</sup> 총 예산; 1,225,000천원(창업센터 시설 운영: 648,520천원/입주기업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선발 등: 576,480천원)

##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집행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b>총계</b>		<b>500,000</b>
행사비	운영 기획 및 지원 대상 선발, 엑셀러레이터(AC) 및 벤처투자자(VC) 유치 및 매칭, 데모데이(IR) 개최, 기타 등 행사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	95,000
전문가매칭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컨설턴트, 코칭,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록 등 :5개 팀 × 10,000천원	50,000
개발지원	상품 개발 및 양산 등 지원 : 5개 팀(기업) × 50,000천원	250,000
홍보마케팅	국내외 유통망 및 DDP store 입점, 전시 등 참가, 홍보마케팅 등 : 최대 5개 팀(기업) × 20,000천원	100,000
운영경비	행사 심사비, 회의비 등 추진경비	10,000

### 2) 출연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기존의 사업과 달리, 단순 아이디어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하고 디자인 시제품을 보유한 청년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디자이너 제품의 양산, 제조, 홍보 마케팅 창업 성공의 일련의 과정 모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청년 기업’(창업주가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연령으로 구분되던 지원 대상을 활동경력으로 재편하는 것이 최근 문화예술 지원공모사업의 추세임을 고려하면, 나이로 구분 짓는 ‘청년-기성’ 간 세대별 이분화 구조의 공모사업보다는 활동 경력에 따른 단계별 체계로 재편하여, 현장에 맞는 합리적 구조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라. 종합의견

- DDP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격한 수익창출은 어려운 상태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DDP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디자인 특화 창업 및 혁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창업 관련 지원사업(창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달리 현장의 디자이너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재윤	02-2180-8118

#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407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및 코로나 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685,000천원

※ 총 출연금액 : 20,975,489천원 (기정 출연금액 : 20,290,489천원 포함)

2) 추경필요성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은 하였으나, 상품화 단계에서 성장이 멈춘 잠재력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기업의 재도약 기회 부여와 디자인 산업분야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00,000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우리시는 코로나19 관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DDP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으나,
- DDP는 개관 이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재정자립)해온 기관임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한 DDP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 보전액 185,000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

다.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모 : 대지 3,191m<sup>2</sup>, 건물 5,937m<sup>2</sup> (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옛 동대문운동장 부지)
- 2) 규모 : 총 면적 86,574m<sup>2</sup>, 지상 4층, 지하 3층
- 3) 개관일시 : 2014. 3. 21.
- 4) 전경 및 위치도



5) DDP 시설 현황 : 5개 공간 21개 시설

알림터	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장, 복합문화공간(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벤션 시설로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li> <li>• 디자인·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 콘서트, 시사회 공연 등</li> </ul>
배움터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미래로 전파·전승</li> <li>• 디자인·패션 전문 전시,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li> </ul>
살림터	디자인샵, DDP스토어, 살림1관(D-숲), 살림2관(크레아), 화상스튜디오, UD플랫폼, 디자인 라이브러리, 잔디 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공유, 창조산업 지식·정보 제공</li> <li>•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 시민 디자인·브랜드 체험</li> </ul>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문화 전시·이벤트,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li> <li>•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li> </ul>
디자인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의 만남과 휴식, 편의지원</li> </ul>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규모 : DDP 입점업체 14개소  
(단위 : 천원)

감면 대상	감면 임대료(A) (사용료50%)	감면 관리비(B)	총액(C) (C=A+B)	비고
14개소	160,000	25,000	185,000	2021년 1차

**※ 감면대상 업체**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사실 입증 가능한 경우
  - 소기업 :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 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경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점덕(☎ 2133-2703)